24. 12. 16. 오후 2:23 인쇄

인원배정

개요 인원배정 편입 복무관리 실태조사 및 평가

군사교육소집

인원배정

관련규정

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2(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)

업무흐름도

해운업체등의 장 해양수산부장관 병무청장 해운업체등의 장

필요인원 신청 **매년** 필요인원 제출 **매년** 업체별 인원배정 **매년** 인원배정 결과확인 6.30. 7.31. 12월중

해운업체등

해운업 분야: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해상화물운송사업 및 외항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업체

수산업 분야 :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원양 또는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

지원인력 규모

병무청장은 군 소요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

업체별 인원배정

병무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, 신청인원, 업체의 규모, 복무관리 실태평가 등을 반영하여 업체별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배정

배정조정

병무청장은 업체 채용계획 변경 등으로 반납한 인원 및 이동근무 등으로 회수된 인원을 필요한 업체로 배정 조정